2002년2월27일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29일자 후생성 고시 제332호, 2000년 9월 29일자 의약발 제990호 후생성 의약안전국장 통지 “화장품 규제완화에 관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 및 2001년 3월 6일자 의약발 제163호, 의약감마발 제220호 후생노동성 의약국 심사관리과장 및 동 감시지도마약대책과장 연명 통지 “화장품 전성분표시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 외 원칙적으로 아래 기재방법에 따른다.

더불어,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상기 후생노동성의 통지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있다.

1. 용기 등에 성분표시 기재방법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기재한다.

단,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성분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성분표시에 이용하는 문자의 크기

서체 및 문자 크기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지만, 명료하게 잘 보이게 기재한다.

3. 성분표시에 이용하는 성분명칭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가 작성하는 “화장품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 수재된 표시명칭 또는 표시별 명칭(표시별 명칭은 2004년 4월 30일자로 폐지)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 수재되지 않은 성분을 배합할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 해당 성분의 표시명칭 작성신청을 하고, “전성분표시명칭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시명칭을 수락 후 제품에 기재한다.

더불어, 표시명칭이 결정될 때까지 동안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한다.

1.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표시명칭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준해 직접 작성한 성분명칭
2. 일본약국방, 일본약국방 외 의약품규격, 의약품 첨가물 규격 및 식품첨가물 공정서에 수재된 성분명칭
3.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
4. 화학명(원칙적으로 IUPAC명) 또는 테크니컬 네임

4. 표시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대응

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작성한 성분명칭과 그에 대해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 작성한 표시명칭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칭을 이용한 제품의 포장재료를 변경 시에 맞춰 표시명칭을 변경할 것.

또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 수재된 표시명칭이 변경된 경우, 혹은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가 표시명칭 작성 신청자에게 연락한 표시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포장재료의 변경 시에 맞춰 표시명칭을 변경할 것.

5. 성분의 기재순서

준비 시 분량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단, 투명비누 등과 같이 준비 시의 분량과 최종제품의 분량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분량에 따라 기재해도 된다.

1. 모든 성분을 배합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한다. 단, 1% 이하의 성분은 순서부동으로 기재해도 된다.
2. 착색제 이외의 모든 성분을 배합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한다. 이 경우, 1% 이하의 성분은 순서부동으로 기재해도 된다.

착색제 이외의 모든 성분 다음에 모든 착색제를 순서부동으로 기재한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착색제에는 타르색소(유기합성색소), 무기안료(산화티탄, 산화철, 망간바이오레드 등) 및 천연색소(β-카로틴, 구아야줄렌, 구리 클로로피린나트륨 등) 외에 아래를 포함해도 된다.

* 전색이나 색조를 조정할 목적으로 배합되는 체질 안료(타르크, 카오린, 나일론, 에틸셀룰로스 등)
* 예제되는 혼합착색제(이른바 프리믹스)에만 배합되는 유분, 산화방지제 등

6. 혼합물

혼합물은 혼합된 성분별로 나눠 기재한다.

7. 추출물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나 희석용매를 나눠 기재한다.

8. 흔히 말하는 시리즈 제품에서의 착색제 표시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 매니큐어, 비누, 오드콜로뉴 등에서는 색조 또는 향조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명이 같고, 색조 또는 향조를 제외한 성상이 현저하게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시리즈 제품”으로 취급된다. 이 시리즈 제품에 한해서, 착색제(상기 5. 참조)에 해당하는 성분은 그 성분이 그 색상의 제품에 배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기호를 기재한 다음 해당 시리즈 제품에 배합되는 모든 착색제를 표시해도 된다.

9. 향료에 대해

향료가 하나의 성분으로 다루는 “향료”로서 기재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다른 성분과 동일하게 배합량 순서 안에 조합하여 기재한다.

10.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성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성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1. 배합된 성분에 부수하는 성분(불순물을 포함한다)으로, 제품 중에는 그 효과가 발휘되는 양보다 적은 양 밖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른바 캐리오버 성분).
2. 배합성분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방부제, 산화방지제 등의 성분

예1: 유지 중에 첨가되는 “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등의 산화방지제

예2: 식물추출액 중에 첨가되는 “솔빈산” 등의 방부제

1. 배합성분 중에 혼재하는 다른 성분

예1: 스테아린산 중에 혼재하는 “팔미틴산” 등의 지방산

예2: 트리에탄올아민 중에 존재하는 “모노에탄올아민” 및 “디에탄올아민”

1. 반응생성물 중에 존재하는 미반응물 또는 반응부성물

예1: 폴리옥시에틸렌 세틸에테르 중의 미반응 알코올

예2: 지방산 모도글리세리드 중의 “디, 트리”체

1.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만, 최종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조보조제

예1: 기초 화장품의 제조공정에서 첨가하는 물

11. 기타

지방산과 알칼리를 이용하여 비누가 형성되도록, 제조공정 중에 검화, 중화 등의 반응을 전제로 한 제품은 준비 시(반응 전) 배합성분의 명칭, 반응 후 최종반응생성물의 성분명칭 중에서 어느 것을 기재해도 된다.

단, 최종반응생성물의 성분명칭을 기재할 경우 그 순서는 화학량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이상

1999년 5월 26일 작성

2002년 2월 27일 개정